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5. . . (제회)	

**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 
규칙 폐지규칙안**

제출자	안전교통국장 조홍기
제출연월일	2015. 3. .

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칩

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당해규칙 전면 폐지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(1)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  
칙안, 별첨
- (2) 입법예고(2015.3. .~2015.3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
  -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강남구 주차관리과	
연 락 처	(02) 3423 - 6442